

## ◆ D-51 노사협의회 설립 및 운영방법(30인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 구성은 노사 동수로 각 3명 ~ 5명으로 구성하고, 이중 근로자위원은 10인 이상의 근로자로부터 추천받은후에 추천받은 자가 위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투표하여 선출하여야 함.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기구로서 근로기준법상에서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협의(정리해고시 해고회피노력과 대상자선정협의, 연월차대체휴가 지정시 서면협의, 탄력적근로시간제 협의등)하여야 하고, 그 외 노사간의 협의를 통한 노사공동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 이러한 법적인 취지에 의거 매분기1회이상 회의를 하고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함.